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49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송옥주 · 황명선 · 임미애
박홍배 · 윤준병 · 안태준
허성무 · 염태영 · 강준현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길고양이 및 떠돌이개로 인한 주민 안전, 공중위생,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포획·임시보호·중성화·반환·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개체수 관리,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안 제4조의3 등).

구조·포획·임시보호·중성화·반환·입양 활동을 위한 포획·중성화·회복·임시보호·입양연계 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길고양이”란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야외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15. “떠돌이개”란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야외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개를 말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관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공중위생, 주민 안전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회복, 반환, 입양 촉진 및 재유기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민간위탁, 인력·장비·홍보 및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민간보호소, 관련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떠돌이개·길고양이 지원시설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3에 따른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구조, 포획, 중성화, 회복, 임시보호, 입양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지정·위탁 절차, 운영 요건 및 지원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3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13.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u>14. “길고양이”란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야외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u></p> <p><u>15. “떠돌이개”란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야외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개를 말한다.</u></p> <p><u>제4조의3(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관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공중위생, 주민 안전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회복, 반환, 입양 촉진 및 재유기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p> <p><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u></p>

<신 설>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민간위탁, 인력·장비·홍보 및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민간보호소, 관련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떠돌이개·길고양이 지원시설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조의3에 따른 떠돌이개 및 길고양이의 구조, 포획, 중성화, 회복, 임시보호, 입양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하는 시설

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지정·위탁 절차, 운영
요건 및 지원 범위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